EU 식품법상 동물유래식품 수입 규제의 개관

An Overview of Imported Regulation on the food of animal origin

이주형

Lee Joo Hyoung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본부장, 수석연구원

Headquarter Director, Headquarter of Policy Research

1. 서론

EU[1]는 소득수준과 정보의 공개 및 투명성이 매우 높아 식품 등[2]을 수출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최근 EU 위원회가 식품법을 지침(Directive)에서 강제성이 있는 규칙(Regulation)으로 변경함에 따라, 각 회원국의 자의적 조치는 점차 줄어들고 EU 단일규정의 강제화가 진행되고 있어 EU 각 회원국의 수출 시 통일된 대응책 마련이 용이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EU에 식품 등의 수출을 희망하는 많은 식품 기업들이 규제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식품 등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로 구분 관리하는 우리와 달리, EU는 원료(동물성, 식물성)에 따라 식품유래 질병의 관리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식품을 유래 질병을 중심으로 동물유래식품과 식물유래식품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한다. 특히,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 유통 시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EU의 동물유래식품 관련 규정은 다수의 법령 체계로 구성되어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른바 '혼합식품'을 포함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EU로 수출할 때의 규제에 대한 최신 개정 동향을 분석한다.

1) EU 시장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유로존 총 19개국), 영국, 덴마크, 스웨덴,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Brexit 투표로 영국 탈퇴 예정: 탈퇴 통보 '17.3.29)의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터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의 5개 가입후보국과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2개 잠재적 가입후보국이 존재한다.

2) 본 연구에서 식품 등이란 농축수산물과 식품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사용한다.

* Corresponding author: Lee Joo Hyoung
Headquarter of Policy Research,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Seoul 03127, Korea
Tel: +82-2-745-9835 Fax: +82-2-6020-8203 E-mail: jhlee1@foodinfo.or.kr

2. 동물유래식품의 정의

(1) 동물성 원료의 의의

대EU 수출을 위하여 EU의 동물유래식품 관련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물성 원료"의 해당 범위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동물성 원료의 범주는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식품위생에 관한 기본규칙 (EC) 853/2004[3] 및 해당 EU 규칙에 관한 유럽위원회 가이던스(Guidance docu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certain provisions of Regulation (EC) No 853/2004 on the hygiene of food of animal origin)에 명시되어 있다. 동물성 원료에는 축산물의 고기(가축과 야생 모두 포함), 우유, 계란(어란은 어패류에 포함), 어패류, 벌꿀, 로얄젤리, 젤라틴, 콜라겐, 정제된 콘드로이틴, 히알루론산, 연골성분, 키토산, 글루코사민 등이 포함된다. 벌꿀, 로얄젤리, 젤라틴, 콜라겐도 동물성 원료에 포함되므로 함유 식품의 EU 수출 시 동물성 원료에 대한 EU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동물성 원료를 함유한 식품은 해당 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원료의 상태에 따라 ① 동물성 미가공식품, ② 동물성 가공식품, ③ 혼합식품으로 구분되며, EU 수출 시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2) 동물성 미가공식품

가공(Processing)[4]을 거치지 않은 동물성 원료를 함유한 식품이 "동물성 미가공식품"에 해당된다. 미가공의 개념에 대해 상세히 정의한 규칙 (EC) 852/20044 Article 2의 1. (n)에 따르면, "미가공 식품(Unprocessed Products)"이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써, 분할, 분리, 절단, 슬라이스, 발골, 다지기, 껍질 벗기기, 분쇄, 자르기, 세척, 다듬기, 탈곡, 제분, 냉각, 급속 냉동 또는 해동된 식품을 의미한다. 냉동, 절단 등의 처리만으로는 "가공"으로 간주되지 않고, 단백질의 변성 등 형질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만 "가공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유럽위원회 가이던스(ANNEX Ⅰ)는 냉장 · 냉동 이외의 보존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나 진공 포장을 하였더라도 냉장 · 냉동 이외의 보존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공의 범위에 포함되며(fresh), 가공을 통해 육류 제품의 근섬유 조직이 완전히 변성한 경우에는 가공된 육류제품(Meat Products)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열을 가하지 않는 마리네이트 처리라도 중심부까지 완전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가공된 육제품"에 해당되며, 고기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가공처리가 되지 않고 절단면이 신선육의 특성(근육 섬유가 완전히 변성되지 않는 경우)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미가공으로 판단한다.[6] 따라서 소금에 절인 육류와 표면을 태운 육류도 중심부가 신선한 육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가공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냉동 초밥(미가공 해산물을 사용한 경우), 신선육과 채소 꼬치, 꿀에 절인 견과류(Nut) 등은 동물성 미가공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적용된다.

(3) 동물성 가공식품

동물성 원료에 가한 처리가 '가공'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는 "동물성 가공식품"에 해당한다. 유럽위원회 가이던스(ANNEX Ⅱ)는 햄, 살라미, 훈제어(생선), 열 살균 우유, 치즈, 요구르트, 정제된 동물 지방, 젤라틴, 콜라겐 등을 동물성 가공식품의 예로 열거하고 있다.

---

3) EUR-LEX(eur-lex.europa.eu)에 모든 EU 규정이 게재되어 있다. 최신 개정 조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Document Information" 탭을 연 후, "All consolidated versions" 항목에서 최신 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4) "가공(Processing)"이란, 초기(가공 전) 재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 가열, 훈증, 염지(curing), 숙성, 건조, 마리네이트(marinating), 추출, 압출성형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규칙 (EC) 852/2004 Article 2의1. (m)).

5) 이 상태를 육조제품(Meat Preparations)으로 규정(규칙 (EC) 853/2004 ANNEX I 의 1.16 정의)하고 보통의 신선육과 구별한다.

(4) 혼합식품(Composite Products)

혼합식품은 EU 독자적 분류로서, 유럽위원회 결정(2007/275/EC) 제2조는 혼합식품을 "동물성 가공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함께 원료로 포함하는 식품이나 1차 제품의 가공이 최종 제품의 제조상 필수적 절차인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차 제품의 가공이 최종 제품의 제조상 필수적 절차인 경우"란 "동물성 미가공식품 → (가공) → 동물성 가공식품 → (혼합식품의 제조) → 혼합식품이라는 2단계의 가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물성 미가공식품과 식물성 원료를 직접 가공하여 최종 제품인 혼합식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날달걀과 식물성 기름 · 식초 등으로부터 직접 마요네즈를 제조하는 경우는 "1차 제품의 가공이 최종 제품의 제조상 필수적 절차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유럽위원회 가이던스[6]에 따르면 "동물성 가공식품에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한 식물성 원료의 첨가", "동물성 가공식품의 성질상 식물성 원료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혼합식품으로 보지 않고 동물성 가공식품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과일이 들어간 요구르트나 마늘이 들어간 소시지 등은 혼합식품이 아니라 동물성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3. 동물유래식품 관련 일반적 수입규제

(1) 기본원칙

동물유래식품(동물성 미가공식품/동물성 가공식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의 수입규제에 따라야 한다. 동물유래식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한 원칙으로는 수출국 및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사항과 절차적 요건이 있다.

국가가 달성해야 하는 요건으로는 동물성 원료의 원산국이 해당 동물성 원료를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에 의해 승인해야 한다는 것과, 수출하고자 하는 동물성 원료[7]에 따라 개별 설정되어 있는 제3국 리스트(EU에 수출을 허가받은 국가 · 지역의 목록)에 해당 원산국이 게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사업자의 경우, 동물성 원료를 최종 식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의 모든 가공시설에 대해 EU · HACCP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신선육을 EU에 수출하려면 도축장 등이 EU · HACCP에 따른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EU ·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가공된 것을

표1. 동물성 미가공식품 · 동물성 가공식품 · 혼합식품의 개념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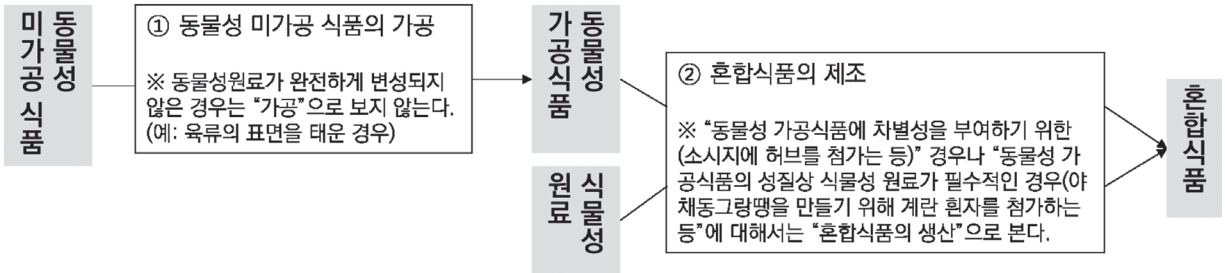

6) 제3국 유래의 혼합식품 수입에 관한 지침서(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llustrative guidance on import/transit conditions and controls of certain composite products, and products which could erroneously be considered as composite products, originating from third countries)

7) 같은 동물성 원료라도 "미가공"과 "가공"마다 제3국 리스트가 다르고, 달성 요건의 차이가 상이하다. 따라서 '가공된' 동물성 원료(예 : 유제품)에 대해서는 제3국 리스트에 게재된 EU 수출을 인정하는 국가라도 "미가공" 동물성 원료(예 : 우유)에 대한 EU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증명하는 해당 수출국 발행의 "위생증명서"를 취득해야 하고, EU로의 수입 시 위생증명서를 제출한 다음 동물검역(수의학 검사)을 통과해야 한다.

(2)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

EU에 동물유래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럽이사회 지침(96/23/EC)에 따라 각 수출국에 의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과 '유럽위원회의 승인'이 전제조건으로 필요하다. 이는 동물에게 투여가 EU 규제상 금지된 물질[8]을 함유한 동물유래식품이 EU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목록은 위원회 결정(2011/163)의 ANNEX에 기재된다. 2019년 1월 개정된 위원회 결정(2011/163)에 따르면 한국은 닭 · 가금류, 양식수산물에 대해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또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의 특성상 천연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제3국 리스트

EU에 동물유래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동물성 원료 및 상태에 따라 EU로의 수출이 허가된 국가 · 지역 리스트인 "제3국 리스트"에 등재되어야 한다. 제3국 리스트는 "제3국" 및 "인정 시설"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칙((EC) 854/2004)에 따라 "제3국"의 인정은 각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신청을 토대로 유럽위원회가 판단하고 시설의 인정은 제3국 당국(소관관청)이 시행한다.

(4) 개별 시설의 EU · HACCP 시설 인정 · 위생증명서 제출

제3국 리스트에 등재된 동물성 원료를 가공하는 개별 시설의 EU · HACCP 인정은 동물유래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일반 원칙을 정한 '규칙((EU)853/2004)의 ANNEX Ⅰ과 ANNEX Ⅱ' 및 '동물성 원료별로 정해진 EU 규칙상의 준수 사항에서 정한 개별 위생요건'에 따라 당해 제3국 소관당국이 시행하게 되어 있다. 모든 제3국 리스트 및 인정 시설은 규칙

표 2.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의 주요 분류와 국가별 승인 현황 (2019년 1월 16일 기준)

	일본	미국	호주	중국	한국
소와 소과 동물(Bovine)	○	○	○	×	×
양 · 염소(Ovine/caprine)	×	○	○	×	×
돼지(Porcine)	○	○	×	×	×
말과 동물(Equine)	×	×	○	×	×
닭 · 가금류(Poultry)	○	○	×	○	○
양식수산물(Aqua-culture)	○	○	○	○	○
우유(Milk)	○	○	○	×	×
계란(Eggs)	○	○	×	○	×
토끼(Rabbit)	×	○	×	○	×
야생 사냥 짐승(Wild game)	×	○	○	×	×
사육 사냥 짐승(Farmed game)	×	○	○	×	×
꿀(Honey)	×	○	○	○	×

8) 유럽이사회 지침 96/23/EC ANNEX I 에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 상정 시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 목록이 나열되어 있으며 단백질 동화 호르몬물질, 항생제, 폴리염화비페닐(PCB) 등이 대상 물질로 제시되고 있다.

((EC) 854/2004) 제12조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유럽위원회 사이트[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어 있는 제3국 리스트의 카테고리는 규칙((EC) 853/2004)의 ANNEX Ⅲ의 분류에 따라 정하고 있다.

EU · HACCP 인정을 받은 시설에서 실제로 동물유래식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 마다 "위생증명서"를 취득하여 제출해야 한다. 위생증명서의 양식은 동물성 원료에 대한 EU규칙 ANNEX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꿀 · 로열젤리 · 기타 꿀벌 유래 제품의 경우, 제3국 리스트에 대해 규정한 규칙((EU) 2016/759)에 의해 위원회 결정(2011/163)에 따른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국이면 모두 벌꿀의 제3국 리스트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규칙((EC) 853/2004) ANNEX Ⅲ의 분류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위원회의 제3국 리스트에 벌꿀 등에 대한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만 받으면 EU로의 수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벌꿀 등을 가공하는 시설의 EU · HACCP 인정은 필요 없으나, EU로의 수출 시에 제3국의 소관당국에 의한 위생증명서의 발행은 필요하다

4. 혼합식품 관련 수입규제

(1) 혼합식품의 의의

동물유래식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3국 리스트에 등재", "가공 시설 등의 EU · HACCP 인정", "수출 시 위생증명서 취득", "수입 시 동물 검역(수의학검사)"가 요구된다. 그러나 혼합식품은 "동물성 가공식품과 식물성 식품 모두를 원료로 포함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는 특성상 혼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원료의 종류와 비율, 동물성 원료가 어느 단계에서 가공되는지에 따라 규제요건의 차이가 다르다.

특히 일부 혼합식품에 대해서는 동물성 원료가 제3국 리스트 게재국에서 가공되었으면, 혼합식품 자체의 제조는 제3국 리스트 게재국이 아니라도 가능하고 수입 시 동물 검역(수의학검사)도 제외대상이며, 동물성 원료의 가공시설이 EU · HACCP 인정 시설이 아니더라도 인정(수입사업자의 증명 의무를 면제)되는 등 EU 규제상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국내 기업이 혼합식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반규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혼합식품의 EU 수출 여부에 대해서 국내산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와 기타 제3국 리스트 게재국에서 생산한 동물성 가공식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경우를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혼합식품을 EU로 수출할 때에 준수해야 할 요건 및 수입 시 필요한 위생증명서 등은 유럽위원회 결정 2007/275/EC[10], 규칙 (EU) 28/2012[11], 규칙 (EU)2017/185[12]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특정 혼합식품

특정 혼합식품(Certain Composite Products)의 범위는 규칙 (EU)28/2012 제3조의1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육류를 함유하는 혼합식품(함유율에 관계없이 육류즙도 육류에 포함), 유제품 · 계란 · 어패류 중 하나를 50% 이상 함유하는 혼합식품, 유제품의 함유율이 50% 미만인 혼합식품이 이에 해당한다. 특정 혼합식품의

9) Non-EU Countries Authorised Establishments(List per Section, List per Country)

10) 혼합식품의 EU 수출 시 가장 기초가 되는 요건을 정한 규제이며, "혼합식품의 정의", "동물검역(수의학검사)의 대상이 되는 혼합식품의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1) 혼합식품 중에서도 동물성 미가공식품/동물성 가공식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 요건을 설명하고 "특정 혼합식품"의 범위, 특정 혼합식품을 EU로 수출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양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2) 경과 조치로서 동물성 원료가 EU · HACCP 인정 시설에서 가공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수입사업자의 증명의무를 면제) 혼합식품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5월 현재 이 규칙은 2021년 4월 20일까지 연장한 후 폐지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EU 수출 시 요구되는 요건은 혼합식품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다.

혼합식품은 EU · HACCP 인정 시설에서 가공될 필요는 없지만, 혼합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동물성 원료(가공육 등)는 제3국 리스트 게재국[13]의 EU · HACCP 인정 시설에서 가공된 후, 최종 혼합식품도 제3국 리스트 게재국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EU 수출 시에 최종 혼합식품 생산국의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제출한 다음 동물 검역(수의학검사)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공육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함유하는 특정 혼합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인 동물성 가공식품"의 생산국과 "최종 혼합식품"의 생산국이 다른 경우(수입한 육류즙을 사용해서 스낵과자를 생산한 사례 등)에는 원료인 동물성 가공식품의 생산국과 최종 혼합식품의 생산국에 대해서 특별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14]. 특정 혼합식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동물성 원료를 50% 이상 함유한 혼합식품에 대해서는 규칙 (EU) 28/2012 제3조의3에 따라 다른 요건이 부과된다. 혼합식품은 EU · HACCP 인정 시설에서 가공할 필요가 없는 것과는 달리 특정 혼합식품과 같은 혼합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동물성 원료(가공육 등)는 제3국 리스트 게재국의 EU · HACCP 인정 시설에서 가공된 후, 최종 혼합식품도 제3국 리스트 게재국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증명서(규칙 (EU) 28/2012 ANNEX)의 제출은 필수가 아니다. 그 대신 동물성 원료가 제3국 리스트 게재국의 EU · HACCP 인정 시설에서 가공되었다는 것을 해당 가공시설의 위생증명서 또는 상업문서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꿀의 함유 비율이 50% 이상이며 다른 동물성 원료를 함유한 혼합식품, 어패류 30%나 계란 30% 함유한 혼합식품은 "특정 혼합식품 이외의 동물성 원료를 50% 이상 함유하는 혼합식품"에 해당한다.

육류 · 우유 성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고, 동물성 원료 사용 비율은 50% 미만인 혼합식품은 동물성 원료는 제3국의 EU · HACCP 인정 시설에서 가공해야 하고 동물 검역(수의 검사)을 받고 동물 검역 시 상업문서 등에 의해 동물성 원료가 제3국 EU · HACCP 인증 시설에서 가공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15].

5. 기타 관련 규제

동물성 가공식품이나 혼합식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동물성 원료에 대한 동물위생 및 공중위생 관점의 규제뿐만이 아닌 기타 관련 규제들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어업을 억제하는 관점의 규칙 (EC) 1005/2008에 따라, EU에 양식어 · 민물고기 이외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EU 회원국에 어획증명서, 가공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 라벨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 (EU) 1169/2011에서는 육류 및 수산물에 관해서 추가적인 표시 규칙을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냉동육, 냉동육가공품 및 냉동 미가공 수산물은 식품 라벨표시에 냉동일(여러 번 냉동된 경우에는 최초의 냉동일)을 기재[16]해야 한다. 돈육, 양고기, 가금류(닭, 칠면조 등)의 고기에 대해서는 식품 라벨표시에 원산국/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13) 이하의 본문에서 "제3국 리스트 게재국"란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을 받은 다음, 제3국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국가"란 의미를 포함한다. 통상 제3국 리스트 게재국은 전제로써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 승인을 얻고 있지만, 일본의 돼지고기, 닭고기처럼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 경우에는 "제3국 리스트 게재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4) 혼합식품 수입에 관한 지침서(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llustrative guidance on import/transit conditions and controls of certain composite products, and products which could erroneously be considered as composite products, originating from third countries)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15) 유럽위원회가 공표한 혼합식품의 제3국 유래의 혼합식품의 수입에 관한 지침서 21면에 기재된 순서도를 참고하면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이 외에도 일반 식품관련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규칙 (EU) 1333/2008), 식품 중 유해 물질의 잔류 기준에 관한 규정(규칙 (EC) 1881/2006), 식품 포장재에 관한 규정(규칙 (EC) 1935/2004) 등을 준수해야 한다.

6. 결론

국내 기업이 EU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EU의 혼합식품 수입 규제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진출에 의욕적이며 자본력이 있는 식품기업의 경우에는 EU로의 원료조달을 통해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방법이나, 제3국 리스트 게재국의 생산 원료를 쉽게 입수하는 아시아나 미국의 EU · HACCP 인정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을 EU로 수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수출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국내 기준으로는 EU 수출이 불가능한 육류즙을 제외하거나, 우유 성분 등을 함유한 혼합식품의 경우 육류즙을 빼고 제3국에서 가공된 달걀을 원료로 사용하는 등 수출용 제품을 수출국 규정에 맞도록 다르게 생산해서 대응하는 방안도 있다.

동물성 식품 및 혼합식품의 EU 수출 시 필요한 모든 규제에 관해 요약하였지만, EU의 동물성 식품 및 혼합식품의 수입 규제는 상당히 복잡하여, 국가에 따라 또는 개별 통관담당자의 규제 이해도 및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운용 실태의 차이가 크다.

이처럼 자국의 식품안전을 위한 규제가 무역장벽으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 특히, 위생규정으로 인한 수출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한번 제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의 규정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므로, 제외국 식품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책 분석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문헌

1.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15),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llustrative guidance on import/transit conditions and controls of certain composite products, and products which could erroneously be considered as composite products, originating from third countries

2. Non-EU Countries Authorised Establishments : List per Section
〈https://webgate.ec.europa.eu/sanco/traces/output/non_eu_listsPerActivity_en.htm〉

3. Non-EU Countries Authorised Establishments : List per Country
〈https://webgate.ec.europa.eu/sanco/traces/output/non_eu_listsPerCountry_en.htm〉

16) 기재는 "Frozen on(일/월/년)"의 형식으로 기재한다.